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 성과 및 평가

정지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부연구위원 (jjung@kiep.go.kr, Tel: 3460-1182)

이주영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원 (jylee@kiep.go.kr, Tel: 3460-1253)

차 례 ● ● ●

1. 논의 배경: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2. 2011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조사 결과
3. 우리나라의 파리선언 이행 현황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05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을 발표하였음.
 - 파리선언은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5대 원칙과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12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파리선언이 제시한 원칙을 바탕으로 개발원조정책 방향을 추진해옴.
 - 현재까지 파리선언이 제시한 12개 지표의 이행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 기초조사, 2007년 중간점검이 이뤄졌고, 2011년 9월 말에 최종보고서가 발표됨.
- ▶ 파리선언 이행 결과는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될 '제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포럼(HLF-4, 세계 개발원조총회)' 에서 주요 어젠다로 다뤄질 예정임.
- ▶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 국제사회는 12개 목표 중 1개의 목표만을 달성하였으며, 각 지표는 개선 정도에 따라 크게 개선된 항목, 부분적으로 개선된 항목, 개선되지 않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파리선언 이행 노력을 통해 수원국의 개발전략 마련, 시스템 개선, 물자 이용 등 원조의 효과적 운영 및 관리 측면은 일부 향상됨.
 - 그러나 공여국간 원조 조화, 원조예측성 향상 등 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외부적 요인은 개선 경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
- ▶ 한국은 DAC 신규 회원국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으나, 파리선언 이행 결과는 DAC 회원국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언타이드(untied), 원조예측성, 수원국 시스템 사용 측면은 크게 미진하여 향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발표될 부산선언은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담고 있을 것으로 주목되며,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ODA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

1. 논의 배경: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제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포럼(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HLF 4)'에서는 2005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채택 이후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됨.
- 파리선언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서는 원조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하에서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고위급포럼(HLF 2)에서 채택된 문서임.
- 파리선언은 원조를 받는 국가의 주도적인 개발 의지를 존중하고, 다수 공여국의 중복적인 사업 수행에서 야기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원조 공여국 간의 정보 공유와 조율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준수해야 하는 개발원조 원칙으로서 그 위상을 지님.
- 파리선언이 제시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공여국과 수원국의 개발의제 및 시스템 일치(alignment), 공여국 간의 조화(harmonization), 성과중심관리(managing for results), 상호책임(mutual accountability)임(그림 1 참고).

그림 1. 파리선언의 주요 과제(원조효과성 피라미드)



자료: OECD(2007), 2006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Overview of the Results, p. 16.

- 파리선언은 원조효과성을 측정하는 12개 지표와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산하기구인 원조효과성작업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은 그동안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파리선언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해옴.
- 2005년 처음 수행된 조사는 지표별 기준(baseline)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7년 중간점검을 거쳐 2010년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음.¹⁾

1) 2007년도 중간점검 평가내용은 권 율·정지선(2008), 「국제사회의 파리선언 이행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8-3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 2010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²⁾가 최근 발표된바, 본고는 이 보고서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파리선언 이행 성과를 정리하고, HLF 4 및 이후 전개될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2011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조사 결과

가. 세부 지표와 목표

- [표 1]은 파리선언에 제시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별 세부 '지표(indicator)'와 '목표(target for 2010)'를 정리한 것임.

표 1. 파리선언의 세부 지표와 달성 목표치

원 칙	지표			2010년 목표
수원국의 주인의식 (ownership)	1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 마련		수원국의 75%가 A 혹은 B 수준의 개발전략 보유
공여국과 수원국의 일치 (alignment)	2	신뢰가능한 수원국 시스템	a. 공공재정관리 (PFM: Public Financial Management)	수원국 절반이 단계 평가에서 상위 단계로 개선
			b. 조달시스템	수원국 1/3이 4단계 평가에서 상위 단계로 개선
	3	국가예산에 원조금액 반영		수원국 85%가 반영
	4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기술협력의 50%
	5	수원국 시스템 사용	a. PFM 시스템	모든 공여국
			b. 조달시스템	모든 공여국
	6	프로젝트 시행기관(PIU) 중복방지		중복 PIU 수 2/3로 감축
	7	원조예측성		계획되었으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비율 1/2로 감축
	8	언타이드		지속적인 개선 노력
공여국간 조화 (harmonization)	9	공여국간 조정된 원조집행 메커니즘		원조 금액의 66%를 프로그램 방식으로 제공
	10	공동수행	a. 현지조사	현지조사의 40%를 공동 수행
			b. 수원국 진단 평가	국가 분석작업의 66%를 공동수행
성과 중심의 관리 (managing for results)	11	성과 중심 프레임워크		투명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의 수 1/3로 감축
상호 책임 (mutual accountability)	12	상호책임성을 위한 메커니즘		모든 수원국이 상호평가체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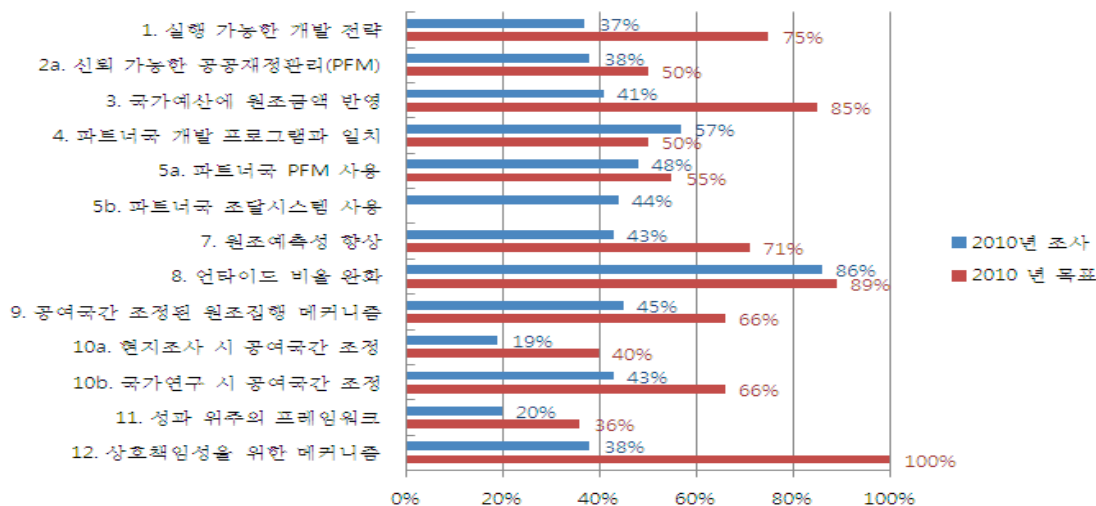
자료: OECD(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권을 외(2009),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67 참고.

2) OECD(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나. 조사 결과

- 2010년 모니터링 조사에 참여한 수원국은 78개국으로 2005년 34개국, 2007년 55개국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임.
- 2005년과 2010년 모니터링 조사에 모두 참여한 국가는 32개국으로, 2005년 조사에 참여했던 니카라과와 예멘이 2010년에는 불참함.
- 2010년 조사에 참여한 수원국으로 유입된 원조 규모는 729억 달러로, 이는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2009년 기준)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임.³⁾
- 조사 결과 목표를 달성한 유일한 항목은 지표 4로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공여국의 기술협력 비중'이 57%로 나타났는데, 이는 목표치인 50%를 다소 상회한 수준임.⁴⁾
-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2005년 기초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개선된 항목은 지표 1과 11인 반면, 지표 3, 6, 7, 10, 12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⁵⁾
- 수원국의 노력을 요하는 지표는 개선된 반면, 공여국의 원조시스템 개선, 공여국간 조화 노력을 요하는 지표의 성과는 낮게 나타남.

그림 2. 2010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



주: 2010년도 조사에 참여한 78개국 기준(지표 3, 4, 8, 9, 10, 11, 12). 단, 지표 1과 지표 2의 경우, 각각 데이터를 제공한 52개국, 76개국 기준임.
지표 5a와 7의 경우, 2010년 달성목표 수준이 2005년 조사 결과에 기초하기 때문에 2005년과 201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32개국을 기준으로 함.
자료: OECD(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 19.

3) OECD(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Table A.0, p. 115.

4) 2010년도 조사에 참여한 78개국 기준이며, 2005년과 201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32개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표 4와 8 두 항목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5) 이하 분석은 5년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2005년과 2010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32개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

1) 크게 개선된 항목: 주인의식 및 성과 중심 관리

표 2. '주인의식' 및 '성과 중심 관리' 조사결과

항 목	지 표	2005년 조사	2010년 조사	2010년 목표
1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 마련	19%	52%	75%
11	성과 중심 프레임워크	7%	22%	38%

주: 2005년과 201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32개국 기준.

자료: OECD(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 21.

■ 2005년도 기본조사 대비 가장 큰 성과를 보인 항목은 파리선언 원칙 중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해당하는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 보유에 관한 사항임.

- [지표 1]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 보유에 대한 평가는 수원국이 자국의 개발목표에 적합한 ① 국가 차원의 개발전략 마련 ② 현실적이고 우선순위가 명시된 개발전략 수립 ③ 전략 실행에 예산지원이 가능한 합리적 비용(well-costed)이 드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함.
- 2010년 목표는 A 혹은 B의 평가를 받은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을 보유한 국가가 75% 이상이 되는 것으로, 2005년과 201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32개국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2005년에는 19%의 수원국이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 2010년도에는 52%로 그 비중이 증가함.
- 2010년도 개발전략 평가에서 A등급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탄자니아와 르완다임.

■ '성과중심 프레임워크 구축' 목표는 초기 상당히 부진했던 바(7%)와 달리 많은 진전이 있었음.

- 지표 11은 투명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성과측정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지 못한 수원국의 수 1/3로 감소를 목표로 설정한 항목으로, 주로 중소득국이 국가개발전략 수립 시 성과측정 프레임워크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임.

2) 부분적으로 개선된 항목: 수원국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

표 3. '수원국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 조사 결과

항목	지 표	2005년 조사	2010년 조사	2010년 목표
2a*	신뢰 가능한 공공재정관리(PFM) 시스템 구축	-	38%	50%
4	수원국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역량개발지원	49%	51%	50%
5a	수원국 공공재정관리(PFM) 시스템의 사용	40%	48%	55%
5b	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의 사용	40%	44%	목표 없음
8	언타이드(구속성 원조 비율 감소)	87%	89%	2005년에 비해 개선

주: 2005년과 201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32개국 기준.

* 단, 지표 2a의 경우 2006년과 2011년 조사 결과가 존재하는 52개국 기준임.

자료: OECD(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 21, p. 44.

■ [지표 2a] 수원국 중 38%의 PFM 시스템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신뢰 가능한 PFM 시스템은 세계은행의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CPIA)'를 활용하여 평가하며, 최소한 수원국 절반이 예산 및 재정관리 평가에서 한 단계(0.5점)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평가 결과는 2005년과 201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52개국에 바탕을 둔 것이며, 이 중 20개 국가(38%)가 목표치인 CPIA 점수 한 단계 상승을 달성함.
- 국가별로는 베트남, 몽골, 모잠비크, 르완다를 포함한 10개국이 5점 만점에서 4.0 이상을 받았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2005년 조사 이후 2단계(1점) 상승하여 가장 큰 진전을 보임.⁶⁾
- 그러나 관련 법 제정이나 PFM 시스템 활용 측면에서는 국가별로 한계가 드러나기도 함.

■ [지표 4]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협력 제공 항목에서 조사대상 공여국은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서라기보다는 공여국 주도로 이뤄졌다는 한계가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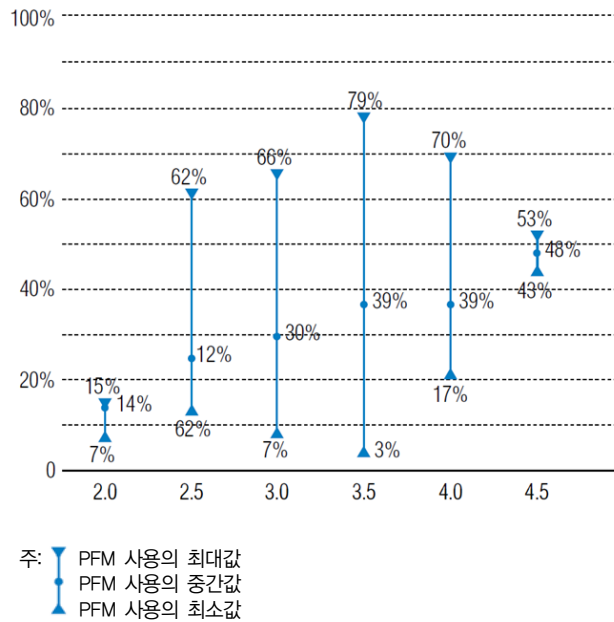
- 또한 2005년도 기초조사에 비해 2%포인트 향상되는 데 불과함.

■ [지표 5a] 공여국이 수원국의 PFM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도별로 편차를 보임.

- 수원국의 PFM 시스템 활용 시 수원국 내 원조 흐름에 대한 정보의 활용, 부문간·부문내 자원의 배분, 통제와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된 원조사업의 48%가 수원국의 PFM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는 기초조사 당시 평균 결과치인 40%보다 증가한 수치임.
- 파리선언은 수원국 PFM 시스템의 질 향상(지표 2a)과 이에 대한 공여국의 활용(지표 5a)을 동시에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두 지표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o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수원국이 PFM 시스템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공여국의 사용률이 높은 것은 아님.
- o 예를 들면, 몽골과 몰도바의 PFM 시스템은 동일한 점수(4.0)를 받았으나 공여국의 활용도는 각각 27%와 70%로 큰 차이를 보임.

6) PFM 시스템 평가는 세계은행의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CPIA)를 활용함.

그림 3. 수원국 PFM 시스템의 질과 공여국의 활용도 간의 상관관계



자료: OECD(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 52.

■ [지표 5b] 수원국의 조달 시스템 사용비중도 2005년 40%에서 2010년 44%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공여국의 법적 절차는 수원국의 조달 시스템 활용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 [지표 8] 언타이드 원조비율은 조사대상 평균 89%로 2005년 기초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공여국의 최빈개도국과 고채무빈곤국(HIPC)에 대한 언타이드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소득국에 대한 언타이드 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높은 언타이드 원조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99%)임.⁷⁾
- DAC의 언타이드 권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협력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이 타이드 원조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⁸⁾
- 언타이드 비중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제경쟁입찰에서 실제 낙찰대상은 주로 선진국 기업이므로 개도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7) DAC에 보고한 전체 양자 원조 9억 7,700만 달러 중 언타이드 원조는 9억 6,400만 달러임.

8) 양자간 원조 중 기술협력과 식량지원은 DAC의 언타이드 권고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OECD(2008),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참고.

3) 개선되지 않은 항목: 공여국간 원조 조화

표 4. '공여국간 원조 조화' 조사 결과

항 목	지 표	2005년 조사	2010년 조사	2010년 목표
7	원조예측성	42%	43%	71%
10a	공여국간 현지조사 공동수행	20%	22%	40%
10b	공여국간 수원국 진단 평가 공동수행	41%	44%	66%
12	상호책임성을 위한 메커니즘	44%	50%	100%

주: 2005년과 201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32개국 기준.

자료: OECD(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 21.

■ 대체적으로 수원국의 노력을 요하는 지표는 다소 개선된 편이나, 공여국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크게 나아지지 않음.

■ [지표 10] 원조 분절화(aid fragmentation)를 방지하기 위한 공여국간 현지조사 공동수행 및 공동 진단평가 항목은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 현지조사 공동수행 비중은 2010년 조사 결과 22%로 2005년 기초조사 결과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8년 중간점검 결과(24%)보다는 오히려 감소한 것임.
- o 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총 1,276개 사업 중 52%가 공여국 공동사업으로 진행되어 목표를 달성함.
- 비용절감 및 수원국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공여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수원국 진단평가 목표 역시 2005년에 비해 3%포인트 상승하였으나, 목표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침.

■ [지표 7]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단년도 또는 다년도 예산 프레임워크에 따라 예정대로 집행된 원조비중은 2005년 42%에서 2010년 43%로 거의 변화가 없음.
- 국가별로 연초 공여국의 원조 분배 계획과 연말 수원국의 원조 수원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연간 원조의 예측가능성(In-year predictability)을 측정하기 때문에 정부간 정보 공유의 문제도 원조의 예측가능성 측정에 고려됨.
- 이 목표는 실제로 43%만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다는 것이 아니며 과대 배분이나 과소 배분의 경우도 계획에 맞지 않는 원조액 분배로 계상됨.

■ [지표 12]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상호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 평가제도를 구축한 국가는 조사대상 국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은 조사대상의 55%가 상호 평가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아프리카는 25%에 불과함.

3. 우리나라의 파리선언 이행 현황

- 우리나라는 DAC 가입 이전부터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조사에 참여해온바, 2005년 기초조사에는 3개, 2007년 중간점검에는 13개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번 조사에는 26개 수원국이 포함되었음.
- 조사대상 수원국에 대한 지원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양자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32%로 증가하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무려 58%를 기록함.⁹⁾
- DAC 신규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모니터링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5. 우리나라의 파리선언 이행 현황

지표		우리나라			DAC 회원국
		2005년 조사 (3개국)	2007년 조사 (13개국)	2010년 조사 (26개국)	2010년 조사 (78개국)*
3	국가예산에 원조금액 반영	11%	37%	38%	41%
4	수원국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역량개발 지원	74%	84%	43%	57%
5a	수원국 공공재정관리(PFM) 시스템의 사용	45%	31%	10%	48%
5b	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의 사용	0%	28%	36%	44%
6	프로젝트 시행기관(PIU) 중복방지	0개	11개	11개	1,158개
7	원조예측성	11%	21%	20%	43%
8	언타이드	-	-	44%	86%
9	공여국간 조정된 원조집행 메커니즘	0%	0%	29%	45%
10a	공여국간 현지조사 공동수행	0%	25%	5%	19%
10b	공여국간 수원국 진단 평가 공동수행	-	0%	50%	43%

주: * 단, 지표 5a, 6, 7은 2005년과 201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32개국을 기준으로 함.

자료: OECD(2008),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OECD(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 184.

9) 2009년 국별프로그램원조(CPA: Country Programmable Aid) 규모 기준. CPA는 양자 원조 중 부채탕감, 인도지원 및 식량지원, NGO 지원, 행정비용 등을 차감하고 실제 수원국으로 지원된 금액을 의미함.

- 2010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파리선언 이행 현황은 DAC 회원국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¹⁰⁾
- 그러나 지표 10b의 타 공여국과 공동으로 수원국 진단평가를 수행한 비중은 50%로 DAC 평균보다 오히려 높은 결과를 보임.
 - 한편 지표 10a의 타 공여국과 현지조사 공동수행 항목은 5%에 불과하여 DAC 평균에 크게 못 미쳤으나, DAC 평균 역시 목표 수준인 40%에 크게 미달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원조예측성(지표 7)과 언타이드(지표 8) 항목 결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정부는 언타이드 비중확대 목표를 수립하고,¹¹⁾ 원조예측성 제고를 위한 중기예산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지표 4]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항목의 경우, 과거 조사 결과 수치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베트남에 대한 지원실적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¹²⁾
 - 한국의 대베트남 기술원조 중 베트남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기술원조 비율이 0%로 계산되었으나 실제로는 100%에 해당함.
- [지표 5a] 수원국의 PFM 시스템 사용비중은 10%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몽골, 르완다, 베트남의 경우, 수원국 대상 조사 결과 신뢰할 만한 PFM 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¹³⁾ 우리나라의 이들 국가 PFM 시스템 사용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¹⁴⁾
- [지표 5b] 수원국의 조달시스템 활용에 관한 항목 수치는 36%로 과거보다는 높음.
 -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조사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국가에서 조달시스템 활용도가 높아진 반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조달시스템 활용도가 오히려 감소함.

10) 조사대상 수원국의 수가 연도별로 매우 상이하여 절대 수치에 기반을 둔 성과평가는 무리가 있으며, 세 번의 조사에 모두 포함된 수원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할 경우, 표본이 3개국에 불과하여 일반화의 오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본고에서는 2010년 조사 결과 위주로 서술하고자 함.

11) 2015년까지 언타이드 비중을 75%로 확대할 계획(「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 10. 25)).

12) 외교통상부는 베트남 정부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OECD에 수치 정정을 요청한 상태임.

13) 지표 2a 항목에서 이들 국가는 5.0 만점에서 4.0 이상의 점수를 받음.

14) OECD 통계 각국별 데이터 참고(<http://stats.oecd.org/Index.aspx?lang=en&DataSetCode=SURVEYDATA>).

4. 평가 및 시사점

- 파리선언은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세 차례의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파리선언 이행을 통해 원조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 측면을 일정 부분 향상시켰으며, 각국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근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Wood *et al.*(2011)은 파리선언 이행에 관한 평가보고서에서 파리선언이 제시한 목표 달성기한은 종료되었으나, 이는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지지에 기반을 둔 국제적 약속이었으며, "완전히 실행된 것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아닌(neither fully implemented not yet outdated)"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¹⁵⁾
 - Chandy(2011)는 파리선언이 결과적으로 매우 저조한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채택한 다섯 가지 원칙과 목표 지향적 접근법은 원조효과성 어젠다에서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¹⁶⁾
- 그러나 원조 시행기관이 원조방식의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파리선언 12대 지표에 관한 기술적 평가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그러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원조관리의 부담은 오히려 원조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HLF-4에서는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파리선언 이행 성과가 공유되고, 그간의 개발협력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 ODA의 선진화가 시급한 우리나라의 경우 파리선언은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HLF-4를 통해 전개될 개발효과성에 관한 새로운 원칙과 목표를 적절히 반영한 ODA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임. **KIEP**

15) Wood *et al.*(2011). *The Evalu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Phase2: Final Report*.

16) Chandy, L.(2011), "It's Complicated: the Challenge of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 (9. 22)